

의 안 번 호	제 867 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월 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67
----------	-----

발의연월일 : 2021년 10월 1일

발 의 자 : 송미애, 연종석, 윤남진
원갑희, 이상정, 이상식
전원표

1. 제안이유

- 도내 균형발전 차원의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균형발전 차원의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에서 “균형발전 촉진지역”으로 확대함
(안 제2조제9호, 안 제25조, 안 제30조)
-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4조)
“2021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조례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1. 9. 16. ~ 2021. 9. 28. (12일간)
-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와 협의함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성장촉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
를 “”균형발전 촉진지역“이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2조
제3호”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장촉진지역”을 “균형발전 촉진지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성장촉진지역”을 각각 “균형발전 촉진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 <u>성장촉진지역</u> ”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0. ~ 15. (생략)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 <u>균형발전 촉진지역</u> ”이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2조제3호----- -----. 10. ~ 15. (현행과 같음)
제14조(투자진흥기금) ① ~ ③ (생략)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1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자진흥기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2026년 12월 31일</u> ----- ----- -----.
제25조(공장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국내기업이 도내 <u>성장촉진지역</u> 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25조(공장운영비 등 지원) ----- ----- <u>균형발전 촉진지역</u> ----- ----- ----- ----.
제30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생략) 1. ~ 2. (생략) 3. 도지사가 <u>성장촉진지역</u> 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u>균형발전 촉진지역</u> ----- ----- ----

현행	개정안
② 1. ~ 2. (생략)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투자기업이 <u>성장촉진지역</u>에 투자환경 개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② 1. ~ 2. (현행과 같음) ③ ----- <u>균형발전 촉진지역</u> ----- ----- ----- -----. ④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군의 경우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 ④ <생략>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시행 2019. 9. 16.]〉

시도	성장촉진지역
강원(8)	삼척시 태백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5)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남(6)	공주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전북(10)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9)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함천군
합계	70개 시군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개정 2011. 4. 1>,<개정 2018. 11. 9.>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 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저발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저발전지역”이란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지역발전도를 조사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시·군을 말한다.

제6조(불균형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별 지역발전도를 조사·분석하여 매 5년마다 저발전지역을 선정한다. <개정 2010. 4. 1>,<개정 2018. 11. 9.>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성장촉진지역”에서 “균형발전 촉진지역”으로의 지역구분 변경에 따른 수혜지역 확대(제천, 증평 추가)
 - 성장촉진지역 :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 균형발전 촉진지역 :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3. 관련조문

- 안 제2조 (정의)
- 안 제25조 (공장운영비 등 지원)
- 안 제30조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 요인

- 공장운영비(오폐수 처리비용, 물류비용), 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지역으로 제천, 증평 추가에 따른 비용 추계

나. 추계의 전제

- 국내 · 외 기업의 요구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개최

다. 추계결과 : '22년부터 향후 5년간 총 3,000,000천원 정도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기존 재원 분담비율

구 분	지 역	분담비율(도:시군)
수도권 인접지역	청주, 충주, 진천, 음성	30 : 70
일반지역	증평	
	제천	40 : 60
성장촉진지역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 변경 재원 분담비율

구 분	지 역	분담비율(도:시군)
그 외 지역	청주, 충주, 진천, 음성	30 : 70
균형발전 촉진지역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40 : 60

○ 보조금 지원은 도-시군-기업 3자간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정

- 조례 개정으로 도비 40% 지원 지역에 증평만 추가
- 증평은 분양가능 산업단지가 없으며 초중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으로 2023년 준공 계획으로 보조금 수요는 2023년 이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

5. 연도별 비용 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도)	2차년도 (2023년도)	3차년도 (2024년도)	4차년도 (2025년도)	5차년도 (2026년도)	계
세 출	-	-	1,000,000	1,000,000	1,000,000	3,000,000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	-	500,000	500,000	500,000	1,500,000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	-	500,000	500,000	500,000	1,500,000